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10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하여져 있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맞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함.

II. 주요골자

- 가. 현 정원(1,259명) 변동 없이 일반직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일반직을 18명 증원하고, 기능직을 18명 감축함
- 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도록 정원을 조정함

III.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자율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4. 12. 18, 영 제21조제2항)된 바 있고, 이에 따라 지난 해 151회 임시회에서 우리구 조례를 개정(2005. 7. 1, 조례 제0630호)한 바 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복식부기회계제도 기반구축을 위한 복식부기팀(재무과)과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가격조사팀(세무1과) 신설 및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등 최근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관련 업무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일반직과 기능직간 비율을 재조정하여 현 정원내에서 자체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검토결과 2006. 1. 1. 현재 정년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기능직(퇴직 14명, 공로연수 8명)중 현인원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렬의 정원을 일부 감축(총 18명)하여

업무신설에 따른 일반직 소요인력을 증원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종류별·직급별 정원조정안 및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명)

구 분	전·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일반직	조정전	870	1	7	51	165	252	291	103	·
	조정후	888	1	7	51	168	257	275	129	·
	증 감	+18	·	·	·	+3	+5	△16	+26	·
기능직	조정전	374	·	·	·	·	16	43	96	219
	조정후	356	·	·	·	·	15	37	84	220
	증 감	△18	·	·	·	·	△1	△6	△12	+1

※ 일반직과 기능직간 상계조정(일반직 증원 18명, 기능직 감축 18명)

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第103條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의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091호)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및 그 출장소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 ①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상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직급별 정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분등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18>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18>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부령 제253호)

제8조 (정원책정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업무량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4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정원채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자치구	특별시	78% 이상	20% 이내	2% 이내
	광역시	80% 이상	18% 이내	2% 이내

- 비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고용직의 경우에는 방법원·지도원정원을 제외한다.

[별표 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나. 시·군·자치구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자치구	1%이내	7%이내	19%이내	29%이내	31%이내	13%이내

- 비고 : 1.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을 26% 이내, 7급을 30% 이내로 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자치구	3%이내	6%이내	14%이내	32%이내	45%이상

- 비고 :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